

23. 3. 15.(수) 16:00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 사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권역별 대표회의 회의자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목 차

Ⅱ . 개	요	.....	1
Ⅱ . 중점 논의안건		.....	3
①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화 대책	.....	4
②	서울시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제안	.....	6
③	부산자치경찰 정책세미나 계획 논의	.....	15
④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 결과 보고	.....	16
⑤	자치경찰위원회 치안시책 우수사례집 제작 제안	.....	26
※	경찰청 주요 추진업무 설명자료 관련 논의	.....	27

# I.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권역별 대표회의 개요

## □ 개 요

- 일 시 : '23. 3. 15.(수) 16:00 ~ 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18층)
- 참석대상 : 7명(서울 김성섭 상임위원, 대구 박동균 상임위원, 전남 백혜웅 상임위원, 경기남부 김병화 상임위원, 충남 이시준 상임위원, 경남 황문규 상임위원, 부산 박노면 상임위원)
- 회의안건
  -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화 대책
  - 서울시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제안
  - 부산자치경찰 정책세미나 계획 논의
  -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 결과 보고
  - 자치경찰위원회 치안시책 우수사례집 제작 제안
  - ※ 경찰청 주요 추진업무 설명자료 관련 논의

##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 16:00		○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도착 및 등록	
16:05~16:30	25'	○ 부산위원장 예방 및 환담	참석자 전원
16:30~17:30	60'	○ 권역별 대표회의 - 자치경찰 이원화 등 회의안건 논의	
17:30~18:30	30'	- 회의 개최 장소 현장 방문	
18:00~20:00		만찬	

□ 참석 상임위원 현황

연번	지자체명	사진	성명(연령)	학력 및 주요약력
1	서울특별시		김성섭 (64)	- 前 서울중부경찰서장 -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前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2	대구광역시		박동균 (52)	- 前 경찰학 교수(25년) - 前 경북경찰청 인권위원 - 前 한국자치경찰학회 부회장
3	전라남도		백혜웅 (64年)	- 前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경비교통과장 - 前 곡성경찰서장, 영광경찰서장, 장성경찰서장
4	경기남부		김병화 (58)	- 前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 前 대구경찰청 차장 - 前 서울 동대문경찰서장
5	충청남도		이시준 (66)	- 前 공주 경찰서장 - 前 부여 경찰서장 - 前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6	경상남도		황문규 (50)	- 現 중부대학교(충청캠, 충남 금산) 교수 - 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특위 자문위원 - 前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7	부산광역시		박노면 (63年)	- 前 동의과학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 前 부산남부경찰서 서장 - 前 부산경찰청 경무과장

## Ⅱ . 중점 논의안건

- ①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0화 대책
  - ②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논의
  - ③ 부산자치경찰 정책세미나 계획 논의
  - ④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 결과 보고
  - ⑤ 자치경찰위원회 치안시책 우수사례집 제작 제안
- ※ 경찰청 주요 추진업무 설명자료 관련 논의

# 1

##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화 대책

### □ 그간 경과

- '22년 7월 위원회 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한 수시직제 요구서를 행안부로 제출('22. 3월), 지속 설득하였으나 행안부에서 불수용('22. 7월)
- (행안부) 現 정부의 '공무원 증원 최소화' 기조로 증원을 보수적으로 검토 중
  - 결국 '23년 상반기 파견 인원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 채 기간만 6개월 연장하고, 파견 기간 만료 전 관계기관 간 재논의하기로 결정
  - \* '23. 2월 세종 사무국 설치로 파견자 4명(정원2, 非정원2) 증원 / 167명 → 171명(非정원 118명)
  - 위원회 사무 중 지방직이 수행 가능한 범위를 폭넓게 검토하여 필수 불가결 경찰 인력만을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자체 소속 기관이지만 지역 치안 사무의 기획·집행 등 관련 전반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경찰행정 수행기관임
  - ↳ 경찰행정의 전문가인 경찰 인력의 적정 배치, 원활한 자치경찰 정책 수립·조율 필요
- 경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직으로 대체하기 위한 일반직 정원 증원 또한 실제 반영,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 □ 향후계획

- 서울자치경찰위에서 '23년 파견경찰관 인력 산출 양식 등을 마련 후 각 시·도 위원회 대상 전파·취합 예정(3.31. 경찰청 제출 예정)
- 인사혁신처 대상 정원화 제외 인원 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 건의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재산정(3월)

경찰청 검토 및  
수시직제 요구(4월)

행안부 심사(6월)  
기재부 심사(7월)  
※ 파견연장 진행

최종 확정(8월)

## <참고자료>

	<b>경찰청 자치경찰과 업 무 연 락</b>	전 화 경비 0672 일반 3150-0672 담당자 경감 이인재
---	------------------------------	---

'23. 3. 13.(월)

수 신 : 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인사 담당)

제 목 : '23년 사무국 파견경찰 정원 확보 관련 협조요청

- 경찰청(자치경찰과)에서는 '23. 3. 9.(목)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의 時, 쏠 위원회 대상으로 '23년 파견 경찰관 정원 확보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재산정(3월)  
※ 서울자경위 취합

경찰청 검토 및  
수시직제 요구(4월)

행안부 심사(6월)  
기재부 심사(7월)  
※ 파견연장 진행

최종 확정(8월)

- 위와 관련, 행안부의 그간 입장에 대비한 금년도 인력 산출 방향을 마련하였으니, 각 위원회에서 참고하여 '23. 3. 31.(금) 18:00까지 필요 인력안(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서울자치경찰위에서 '23년 파견경찰 인력 산출 양식 등을 마련 후 각 위원회 대상 전파·취합 예정 → 3. 31. 경찰청 제출

### < '23년 인력 산출 방향 >

- (행안부) 現 정부의 '공무원 증원 최소화' 기조로 인해, 증원을 보수적으로 검토 중, 경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직으로 대체 가능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
  - ⇒ **위원회 사무 중 지방직이 수행 가능한 범위를 폭넓게 검토하여, 필수 불가결 경찰 인력만을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 (행안부) '22년 필요 인력안의 경우, 동일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회별로 편차가 상당
  - ⇒ **각 위원회 간 소통·협의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 後 필요 인력 산정을 진행**

- [ 별 첨 ] 1. '22년 자치경찰위원회 제출 직무분석 자료(참고용)  
2. '23년 위원회 파견경찰 정원 확보 계획(원탁회의 자료)

## 경찰청 자치경찰과장

## 2

# 「서울시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제안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치안을 한층 개선시킬 수 있는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함

## 1

### 제안배경

-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추진에 따른 시·도의 신속 대응 필요
  - 국정과제 선정('22.7.26),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9.6) 등 현 정부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경찰권 강화’ 천명
    - ‘자치경찰권 강화’(국정과제 111번) : 이원화 모델안 마련, 시범운영 후 전면시행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22.10월~, 6회 개최)
    - '23.2월 말 분과위 차원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결정 및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
  - ‘이태원 참사’ 이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23.1.27) 에 자치경찰 이원화 명시, 추진의지 재확인
    - 현장 재난안전 관리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명시
- 지자체가 바라는 ‘최선의 모델안’ 제안,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
  - 정부 주도로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시·도의 의견 적극수렴 및 반영 필요
    - 분과위원회에서 시·도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상호 충분한 논의는 없었음
    - 충분히 시·도 의견을 제안하지 않을 경우, 다시 형식적인 자치경찰제에 머물 우려
  - 서울시는 전면적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제안,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
    - 2018년 전면적인 이원화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안한 서울시가 기존 모델안을 보완, 지자체 입장에서 ‘최선의 모델안’을 제안·건의하여 실질적인 자치경찰권 강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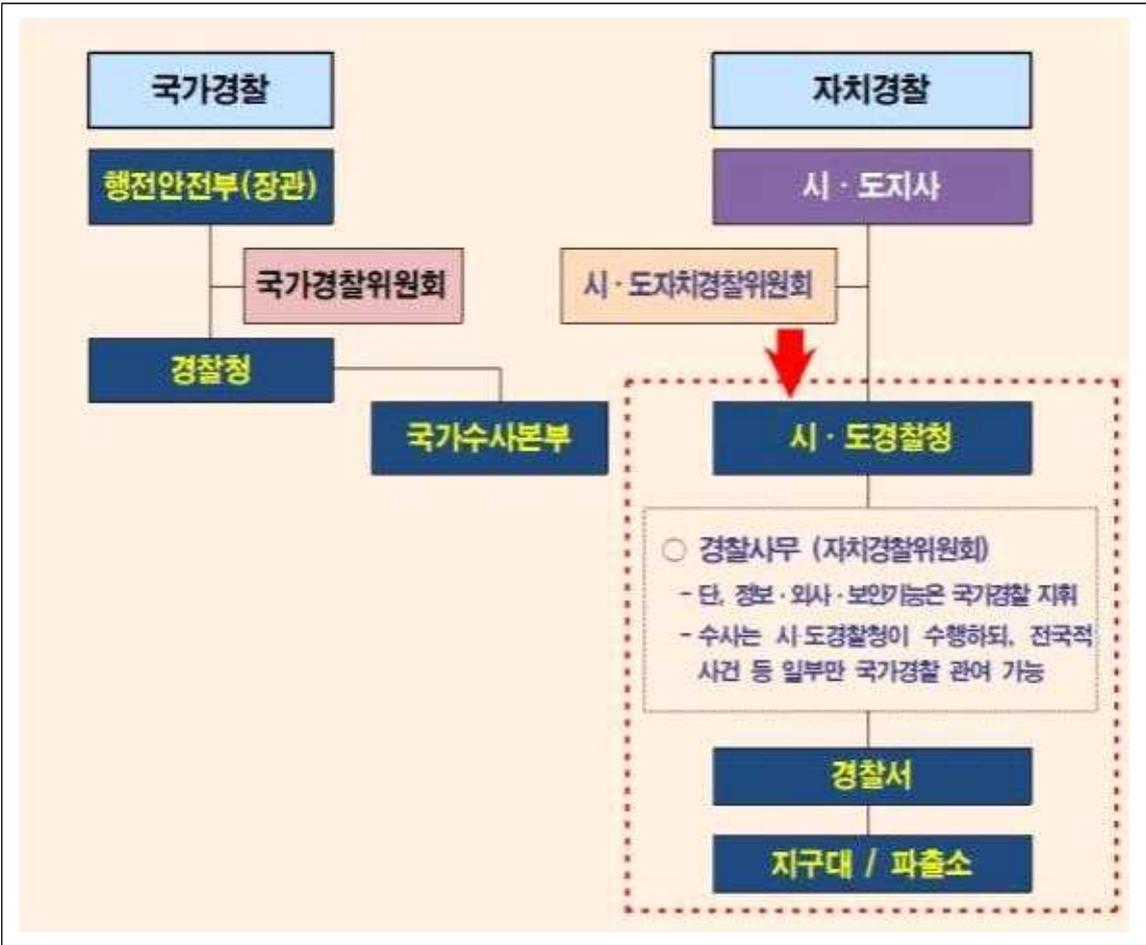
→ 시범실시 대상 시·도에서 실시가능한 ‘부분 이원화 모델안’을 검토 중임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전면 이원화 모델안’을 보완 발전하여 제안함

## 2 서울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 □ 이원화 기본방향 : 자치경찰 중심의 전면적인 이원화

- ◆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인력·사무 등 전부 시·도로 이관함이 기본원칙**
  - 시·도경찰청 소관사무 전체를 자치경찰사무로 지정(정보, 외사 등 일부제외)
  - 시·도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청장 임명
- ◆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은 지방직화하되, 전환 반대 시 임용권 위임**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시·도 소속으로 이관(지방직화)
  - 단, 신분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하여 임용권 전반을 시·도로 위임하는 경과규정 신설 및 단계적 설득·이관 추진

### □ 이원화 모델안 체계도



## □ 이원화 모델안 주요내용

### 1. 조직 ▶ 시·도 산하로 시·도경찰청 이하 기관, 자경위 운영

#### ○ (시·도경찰청) 시·도 산하로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 설치

- 시·도경찰청을 시·도 소속으로 설치하고, 시·도경찰청 산하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를 두는 것을 법령에 명시하고 일괄 이관함  
(시·도에 별도의 국가경찰 조직을 두지 않음)

**<장점>** ① 별도의 국가/자치경찰 청사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② ‘시·도경찰은 시·도 소속’으로 직관적이며 **시민이 이해하기 쉬움**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기존대로 시·도지사 산하로 운영하되, 구성 자율성 강화

- 시·도지사 소속으로 기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민주적 치안행정 추진을 위하여 존속하여 운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전반 관장
- 단, 자치경찰위원 추천기관 등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권 강화

**<장점>** ① 현행 자치경찰제 추진사항 연계 등 **치안행정의 연속성 강화**  
②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자치경찰 관장, **민주성·중립성 확보**  
③ 시·도 조례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도의 책임행정 구현**

#### ○ (경찰 조직·정원) 지역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시·도가 결정

-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시·도가 지역치안을 총괄함에 따라, 시·도경찰 정원, 지역경찰 설치 등 조직관련 사항은 시·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 단, 국가 전체의 치안균형을 고려하여 시·도별 정원 등은 국가경찰 의견 수렴

**<장점>** ① 시·도가 충분한 조직권한 하에 지역치안 총괄, **시·도의 책임행정 구현**  
② 시·도 지역사정에 맞는 조직권한 행사, **효과적인 행정 추진 가능**

## 2. 사무

###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 전부 수행 (단, 정보·외사 등 일부 제외)

- (원칙 :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 시·도경찰청 사무’ 원칙
  - 시·도경찰청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국가경찰사무’가 아닌 모든 시·도경찰청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 지정함이 원칙
- (예외 : 국가경찰사무) 정보·외사·보안 등은 국가경찰사무로 구분
  - 국가의 존립 및 범국가적 대응 등 국가 전체의 치안운영과 관련된 사항인 ‘정보, 외사, 안보’ 기능은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사무로 지정 및 국가경찰이 지휘
- (사무규정) 자치경찰 중심 사무구분(국가경찰사무 열거주의) 및 포괄적 규정
  - ‘국가경찰사무’로 법령에 지정한 사항 외에는 모두 자치경찰사무로 규정 (열거주의) 및 사무규정 시 개별사무가 아닌 ‘기능’ 위주로 포괄적으로 규정
  - ※ ‘정보·외사·안보’ 등이 중복된 경합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 간주토록 명시, 혼란 방지

<장점> ① 시·도가 지역 치안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시·도의 책임행정 구현  
② 시·도가 지방행정-치안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계, 치안행정 효과 상승  
③ 각 사무별 구분이 명확해져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현장 혼선 해결

-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포함하되, 자경위가 포괄적으로만 지휘
  - 자치경찰사무 관련 수사사무의 경우 기존대로 자치경찰사무로 편성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지휘 및 시·도경찰청장이 수사 집행
  - 국가경찰사무 대상 수사사무는 해외사례 및 기존규정 등을 고려하여 지정

① 정보·보안·외사 관련 수사사무    ②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③ 시·도 단위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사항 (공수처 수사사항 제외)  
④ 해당 시·도경찰청 경찰관이 연루되어 해당 시·도경찰청이 수사하기 부적합한 비위사건  
⑤ 그밖에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 중대한 사건으로서 시·도자경위-경찰청장이 합의한 사건

<장점> ①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인 수사사무를 지휘할 수 없던 모순 해결  
② 범죄예방(사전)-범죄대응(사후) 양자를 연계하여 치안정책 효과성 향상  
③ 자치경찰위원회가 포괄적으로만 지휘하여 수사의 민주성·중립성 확보

### 3. 인사

## 지방직 경찰로 신분전환 원칙, 시·도지사가 청장 임명

- (원칙 : 신분전환)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은 모두 지방직으로 전환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관 전원은 해당 시·도 소속의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신분 전환 (해당 기능 근무인원 전원 지방직화)
  - 신분전환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되, 경찰관 개인 동의를 통해 전환
    - ※ 임명권자를 달리 하는 주체로의 강제전출은 위법하며(대법원 판례 2008두5759), 강제 신분전환을 법률에 명시하고 강행할 경우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 우려
- (예외 : 임용권 위임) 신분전환 미동의 경찰관의 임용권은 시·도로 위임
  - 신분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에 대하여는 임용권 전부를 시·도에 위임할 것을 법령에 경과규정으로 마련

<장점> ① 시·도에 경찰관이 소속됨에 따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소속감 확보  
② 시·도 소속 경찰관 지휘에 따른 효과적인 지역치안행정 추진 가능  
③ 시·도 후생복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찰 복리 증진 가능

- (신규채용) 국가직(경찰청) / 지방직(시·도경찰청)을 구분하여 동시 채용
  -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필요인원만큼 신분을 구분하여 채용하되 전국 동시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 시·도별 지원자 중 채용 추진

<장점> 채용시부터 지방직으로 경찰을 채용, 소속감 확보 및 자치경찰 정착

- (시·도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
  - 자치경찰 중심 이원화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역치안의 최종 책임자가 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치안철학을 반영할 청장을 자치경찰위원회 동의를 거쳐 임명

<장점> ①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지사 와 치안철학을 공유, 지방행정과 연계한 효과적인 치안행정 수행 가능  
② 민주성을 갖춘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인재 검증 강화 및 치안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4. 지휘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집행

- (지휘주체) 자치경찰위원회(원칙) / 국가경찰 지휘(예외)
  - 민주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목표, 기능별 정책 방향 등을 사전적·포괄적으로 지휘하며, 서울경찰청은 이를 구체화하여 집행
    - ※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선 조치, 후 보고' 하도록 법령에 규정
  - 단,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수준의 비상상황 또는 국가적인 수사사항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이 제한적으로 지휘
    - ※ 국가경찰의 지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자경위 동의를 전제로만 허용, 자율성 확보
- (지휘대상) 시·도경찰청장(원칙) /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예외)
  -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성격 상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 단, 재난·다중운집행사 등 긴급한 지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의 장에 대하여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

- <장점>**
-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포괄적 지휘만을 수행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책임 치안 구현 및 중립성 확보
  - ② 국가경찰의 지휘 등 개입은 최소화하여 자율성 강화
  - ③ 예외적인 경우 경찰서장 등 직접 지휘를 통해 신속한 치안행정 추진

## 5. 재정

###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및 세원 이관, 특별회계 마련

- (교부세) 확대된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교부세 신설·지원
  - 자치경찰사무 확대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과소 산정·지원된 국비 정상화 등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마련 및 지원
    - ※ 단, 교부세 지원기준 설정 시 지역의 치안수요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시·도의 재정 자립도는 미반영하는 등 치안수요가 집중된 서울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
    -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과소하게 지원되어 상당한 시·도비를 추가 편성하는 바, 세원 이관 전까지는 충분한 교부세 지원 필요

**<장점>** ① 제도시행 초기 교부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치안공백 방지**  
② 같은 특징적인 소방의 경우와 유사하게 편성하여 **형평성 확보**

- **(세원이관·특별회계)** 범칙금·과태료 이관 등 세원발굴 및 특별회계 신설
  - 교통범칙금·과태료 등 경찰 소관 세원은 즉시 이관하고, 향후 추가적인 세원 발굴 및 이관을 통해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 시·도 단위로는 교부세 및 이관 세원 등 확보한 재원을 ‘자치경찰 특별회계’로 신설·편성하여 운영

**<장점>** ① 자주재원 지속확보를 통해 자치경찰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  
② 독립성이 강한 특별회계 설치, **자치경찰제 운영의 자율성 강화**

## 6. 재산 ▶ 경찰청사·물품 등 일괄 시·도로 이관 및 관리

- **(재산이관)** 시·도경찰청 이하 청사, 차량, 수사비품 등 **일괄 이관**
  - 시·도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시·도경찰청 이하 재산 주체를 시·도 소관으로 전부 이관(정보 등 국가경찰 기능 소관 재산 제외)

**<장점>** ① 향후 시·도의 자원 또는 국비를 활용한 청사 리모델링 등 **일선경찰 근무환경 개선 가능**  
② 청사건물/토지 소유주체 상이 등 **경찰 재산관련 문제 해결 가능**

## 7. 참여 ▶ 그간 배제되었던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 등 시민권한 명문화

- **(참여강화)** **치안정책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시민참여 법제화**
  - (기획단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치안분야 정책의견을 기획사항에 반영
  - (집행단계) 자율방범대 활성화, 기타 시민의 순찰참여 등 참여경로 확보
  - (평가단계) 매년 초 전년도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 의견수렴 및 환류를 통한 시민친화 치안정책 추진

**<장점>** 시민참여 명문화를 통한 **실질화 및 민주성·치안정책 효과성 향상**

## □ 자치경찰 모델 간 비교

		《부분 이원화 모델》 (’19년 홍익표의원안)	《일원화 모델》 (현행모델)	《전면 이원화 보완모델》 (’23년 서울시 모델안)
개요		- 자치분권위원회 내 자치경찰 특별위원회 검토안 (’18.11월) 및 이를 법률화한 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0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최종 도입된 안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수정 후 가결)	- 서울시가 제안하는 안 (’18년 서울시안과 유사)
제안자		국회 여당, 정부 (당·정·청 협의)	국회 여당, 정부 (당·정·청 협의)	서울특별시
조직	시도	자경위,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신설 (청사 마련 필요)	자경위 신설 (기타 신설·이관 無)	자경위 신설, 시도 경찰청 이하 이관 (기타 신설·이관 無)
	시군구	자치경찰대 설치	미도입	미도입
	지구대 파출소	시도 일부 이관 (40~60% 이관)	이관 없음 (지휘 불가)	시도 전부 이관
사무	자치경찰사무	생안, 교통, 지역경비, 특사경, 일부 수사	생안, 교통, 지역경비 (수사는 사실상 제외)	시·도경찰청 경찰사무 전체 (정보, 외사, 보안, 전국적 사건 등 제외)
	수사	자치경찰사무 관련 일부 수사권 부여	수사권 없음 (국가수사본부 전담)	자치경찰사무 관련 수사권 부여 (단, 자경위는 포괄적으로 지휘)
신분·임용	자치경찰관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이관원칙 (시도청 이하 36%)	부존재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이관원칙 (시도청 이하 대다수)
	경과규정	부존재 (지방직 전환 후 국가직 복귀 가능)	부존재	신분전환 미희망자는 임용권 위임
	시도 임용권	자치경찰관 전반 임용권 보유	일부 임용권 수입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	시도가 자치경찰관 전반 임용
	채용	시도 채용	국가 채용	국가·시·도 일괄채용
	기관장	시·도지사가 임명 (자치경찰본부장)	대통령이 임명 (시·도경찰청장, 자경위 의견수렴)	시·도지사가 임명 (시·도경찰청장)
지휘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본부 이하 조직	자경위→시·도경찰청장	자경위→시·도경찰청장(원칙), 시·도경찰청 이하(예외)	
재정	출범초기 국가부담, 국가재정 이관(교부세 신설)	국가재정 이관 (국고보조금→세원 일부이관)	국가재정 이관 (교부세 신설, 세원이관 확대)	

□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업무

- (주요업무) 연방정부 단위 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 정보수집 등(법무부 산하)
  - 연방법 위반사항, 주(州)를 벗어난 범죄 등을 주로 다루나, 모든 범죄에 대응 가능
  - ↔ 중앙정보국(CIA)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 및 특수공작 수행(주로 국외활동)

FBI 주요 관할 분야	주요 수행업무	구분
대테러(Terrorism)	국내 테러 수사 및 정보활동, 경호	보안
사이버 범죄(Cyber Crime)	해킹 등 각종 사이버공격 대응	수사
방첩(첩보)활동(Counterintelligence)	국내 간첩활동 예방 및 정보활동	보안
시민권 침해사항(Civil Rights)	증오범죄, 인종차별, 인신매매, 강제노역 등 수사	수사
공공부패(Public Corruption)	공직자 부정부패, 선거범죄, 국경·교도소 범죄	수사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핵·방사능·생물학·화학무기 관련 사건 조사 및 예방	보안
조직범죄(Organized Crime)	초국가적/국가적 조직 범죄(마피아 등) 대응	수사
폭력범죄(Violent Crime)	각종 폭력범죄(살인, 연쇄살인 등)	수사
지능범죄(White-Collar Crime)	사기, 횡령, 주가조작, 기타 기업 및 금융 범죄	수사

- (지휘) 자체적으로 수사·정보활동(대통령, 법무부장관 관여 불가 원칙)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상 구분(경찰청훈령)

경찰청 직접수사 대상(제14조)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대상(제15조)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사이버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 <국가경찰사무> 1) 국가단위 정보수집·대테러 등 '정보·보안·외사' 관련 수사사항  
 2) 해당 광역단체 내 집행이 부적절한 공직자·경찰관 비위사항  
 3) 종합대응이 필요한 수개 시·도관할 및 국가·자치간 합의한 대형사건

※ 사이버범죄, 기업·금융범죄, 조직범죄 등은 규모·성격 상 시·도단위 대응이 가능하여 제외

### 3

## 부산자치경찰 정책 세미나 계획

### □ 추진배경

- 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자치경찰 정착 및 이원화 모델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전략 모색
- 출범 2주년 즈음, 위원장·사무국장 연석회의 추진

###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3. 5.25.~26. 1박 2일(목, 금) /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 주제 : 자치경찰 정착 및 이원화 방향
- 주최 :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참석 규모 : 100명(시도자치경찰위원장,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 □ 주요 프로그램(안)

- 1 일차 (13:00 ~ 20:00)
  - ① 부산자치경찰 성과와 과제 발표 및 정책세미나(14:00 ~ 16:00)
    - 주요 참석자 인사말씀(개회사, 환영사)
    -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세러머니
    - 부산 자치경찰 성과와 과제 발표
    - 정책세미나 발표 및 패널토의
  - ②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및 만찬 (17:00 ~ 20:00)
    - 장소: 광안리, 참석: 위원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
- 2 일차 (08:00 ~ 14:00)
  - 朝食 : 광안리 인근 식당
  - 2030 부산엑스포 예정지(북항 등) 견학
  - 시도자치경찰위원장·사무국장, 수행직원 오찬

### □ 협조사항

-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동참

## 4

#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 결과 보고

###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3. 3. 3.(금) 13:30 ~ 17:30 / 엑셈 마곡 신시옥 필리노베이터홀
- 주요 참석자 : 총 27명
  - 협의회 : 14명(시·도자치경찰위원장 13명, 서울 사무국장 1명)
  - 자치경찰분과위원회 : 3명(김선택 위원장, 이상훈 위원, 강기홍 위원)
  - 경찰청 : 2명 (김준철 생활안전국장, 이동규 총경)
  - 한국경찰연구원 : 3명(안성호 이사장, 이황우 고문, 임도빈 고문)
  - 발제자 및 토론자 : 5명 (장일식 박사, 김홍환 박사, 남재성 교수, 박준휘 부원장, 이재원 교수)

### □ 주요 회의내용 (※ 종합토론 정리)

#### < 주민주도형 자치경찰제 확대 > 남재성 교수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얼마나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그 단위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자치경찰제를 주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함.
  -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관서장에 대한 주민 추천제, 자치경찰 사무를 결정할 때 시·군·구청장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함
  - 지역주민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확대,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정보 접근 또는 평가할 수 있는 창구 확대 등 필요
  - 경찰발전협의회 참여 공모제 등을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 필요

###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 중심 일원화 모델로의 전환〉 박준휘 부원장

- 이원화 모델이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모델이 이원화 모델인가에 대해 의문임. 플랜 B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의 최선봉에 있는 미국 경찰의 경우 효율성,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모두 잘 되지 않고 있음.
  
- 조직을 통솔하는데는 목줄(인사)과 밥줄(예산)이 있음. 이 두 가지만 바뀌어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실질화 될 것임.

### 〈 자치경찰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재원 교수

- 자치에 초점을 둔 자치경찰제의 방향 설정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찰’에 초점을 두어 경찰의 권력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하는 권력개편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추진되었음.
  - ‘경찰’ 보다는 ‘자치’에 중점을 두고 자치경찰제 관련 재정지원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지방세 중심으로 자치경찰 자원 확보 필요
  - 지방세로 인건비가 충당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활동과 책임의 방향이 지역사회와 주민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을 의미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이 위탁수행하면서 중앙정부가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자치’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지방세 중심의 재정체제는 자치경찰의 운영과 방향이 지역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됨. 자치경찰 재정거버넌스가 지방의회-지자체 예산-자치경찰부서로 연결되고, 활동의 책임은 주민방향으로 설정됨.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현주소 및 앞으로의 방향〉 이동규 총경

-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에서 다비드상을 만들 듯이 단순히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을 재설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
- 경찰청이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하고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 신제도론에서 이야기 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제도인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고, 수혜자가 되는 주민들의 생각을 지켜보는 등 새로운 문화로 발전하고 있음.
- 경찰청도 경찰조직이 생존하기 위해 혁신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원화 모형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강기홍 교수

- 이동규 총경님께서 경찰청에서 많이 협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음.
-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좀 내 놓는 것이 되어야 함. 다행히도 감사한 것이 이번에 사·도 경찰청에 있는 생활안전과에 있는 인력들은 자치경찰 하는데 넘겨주겠다고 하여 김선택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놀랐음.
- 다만, 결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게 지구대·파출소인데, 좀 더 큰 마음을 먹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길 바람.
-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문제이므로, 사·도 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뚝뚝 뭉치셔야 함. 대통령께서 사·도지사의 의견을 많

이 경청하신다고 하니 시·도지사님들께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많이 시키셔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임.

- 이태원 참사는 경찰과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교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주요 발언 >

#### < 이순동 경북 위원장 >

- 현재의 경찰법은 불완전한 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정도임. 어떤 행정은 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그냥 이대로 두면 안됨.
- 경찰이 열심히 하는데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 함.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인지해야 함.
- 경찰 수뇌부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 함. ‘이원화 시범 실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실시해도 좋음.

#### < 이병록 인천 위원장 >

- ‘이원화 자치경찰제’ 작명 자체가 잘못된 것임. 정확한 표현은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제의 정상화 시범실시’로 명칭을 바꿔야 함.
- 정상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조직과 인력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그때 넘어오는 지원자 수가 5만명이라면 5만 명이 자치단체에 넘어올 때, 국비는 당연히 넘어오게 됨.

다만,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때 인력이라든가 사무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태료·범칙금 이관이 필요함

< 송승철 강원 위원장 >

- 강원도 이원화 안에 대해 도에 보고했을 때 굉장히 만족을 표시했으나,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었음.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하는데, 단순히 심의기관에 만족하라고 하였음. 이 부분에 대해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람.

< 김현태 경남 위원장 >

- 자치경찰사무가 자치사무이냐 위임사무이냐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자치사무로 보고 있음.
- 이상훈 교수님께서 조직이 너무 늘어나서 재정 수요가 많이 유발되면 정부를 설득시키기 어려우므로 자치경찰대를 두 세 개 시·군으로 묶는 방향을 말씀하셨음. 저는 이것을 자치경찰 중심의 이원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민의 손발이 되는 자치경찰대, 지구대·파출소를 그대로 두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국가경찰로서의 경찰서를 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함.

< 이상훈 교수 답변 >

- 저도 김현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같은 생각임. 현장에 있는 파출소는 더 확산되고 주민에게 가까이 가야함. 다만, 그 지휘부가 되는 자치경찰대가 생겨서 현장 경찰관들을 관리하는 직책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자는 의미임. 통합해서 관리하는 층을 두면 시·군·구 마다 계장, 과장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드는 경비를 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임. 국가경찰도 마찬가지로 관할을

좀 더 넓히면 좋을 것임.

-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모이고 경찰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유는 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보다 경찰 제도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임.

**참 고**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 사진**



김선택 자치경찰분과위원장 축사



김학배 협의회장 축사







**□ 추진배경**

- 각 위원회별 우수한 치안시책을 공유하여 벤치마킹 등 협력적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치경찰제 활성화
- 대국민 홍보 통한 자치경찰제 인지도 제고
- 대외적으로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홍보함으로써 자치경찰제 인식 제고
- 학문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제도 발전 도모

**□ 추진방식**

- 각 위원회별 심의 통해 우수사례 최대 5건 제출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2주년(7.1.)을 기념하여 발간
- 전국자경위 및 유관기관 등 배부

**□ 분 야**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사례
- 지방-치안 행정의 연계 사례
- 지역 주민 참여
- 자치경찰제 인식 제고 사례

**□ 향후계획**

- 제16차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3.17.) 안건 상정
  - 우수사례집 제작 및 소요예산\* 등 논의
- \* 소요예산(추정치): 20,000원 x 1,800부 = 36,000,000원
- \* 시도별 각 100부 씩 결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

2023. 3. 9.(목) 10:30

# 경찰청 주요 추진업무 설명자료

## □ 그간 경과

- '21년 末 인사혁신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파견경찰의 비별도 정원 과다를 문제삼으며, 파견 지속의 조건으로 △행안부 대상 정원 확보 △파견인원(비별도정원) 일부 감축 등을 제시
    - 이에, 위원회 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한 수시직제 요구서를 행안부로 제출('22. 3월), 지속 설득하였으나 행안부에서 불수용('22. 7월)
  - 이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 회의('22. 10월~) △행안부·인사처 관계기관 협의(11월) △행안부 조직실장 주재 회의(12월)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행안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
    - 결국 '23년 상반기 파견 인원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 채 기간만 6개월 연장하고, 파견기간 만료 전 관계기관 間 재논의하기로 결정
- \* '23. 2월 세종 사무국 설치로 파견자 4명(정원2, 非정원2) 증원 / 167명 → 171명(非정원 118명)

## □ '23년 정원 확보 계획

- '22년 자경위별 자체 직무진단을 통해 마련한 증원안(전국 175명)을 행안부가 거부한 점과, 국정 기조인 '5년간 공무원 인원 동결' 분위기를 고려,
    - △現 파견 규모 유지 △쏠비별도인력 정원화 등 종래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입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에, 각 위원회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 경찰 인력만을 재산정하여, 새로운 증원안을 마련하고(~3월),
    - 경찰청은 적정 규모의 수시직제 요구서를 제출(~4월), 위원회와 협업하여 행안부 대상 설득
- ※ 파견 기간 만료 時('23. 7월) 인사혁신처 대상 파견 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설득 진행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재산정(3월)

경찰청 검토 및  
수시직제 요구(4월)

행안부 심사(6월)  
기재부 심사(7월)  
※ 파견연장 진행

최종 확정(8월)

## □ 검토 배경

-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경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를 부여

### \* 자치경찰위원회 행사 가능 임용권

- 경정급 :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에 대한 임용권 행사 가능
- 경감·경위 : 승진임용, 신규채용,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행사 가능
- 경사 이하 : 신규채용,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행사 가능

-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만큼, △임용권 행사 현황 △특수 인사시책 등을 파악·공유하고자 함

## □ 시·도별 현황

- 대부분 위원회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하지 않고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 중인 것으로 확인
  - 특히, 경정급 보직 중 희망 수요가 많은 △시·도경찰청 계장 △경찰서 과장 전보 時 위원회가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 <세종> 자체 면접 실시 및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 <서울> 적임자 순번(1·2번) 기재, <부산·대구·경북 등> 대상자를 직접 선정 後 시·도경찰청에 통보, 발령안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전보권을 행사하는 시·도도 다수
  - 이와 함께, 지역관서장 인사 時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한 의견 제시권에 근거하여,
    - △주민 의사 직접 반영(주민추천심의위) △발령 지침 마련·권고 △대상자 적격성 심의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진행 中
- ⇒ 위원회별로 他 시·도의 인사 시책 중 시행 가능한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분위기 확산 도모

## □ 그간 경과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월)에 따라 지역별 균형있는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맞춤형 R&D 사업발굴로 자치경찰 과학 치안 역량 강화 추진
  - 이에, 경찰청 자치경찰과를 R&D사업 주관기능으로 지정 △신규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21.12월) △ 과학치안진흥센터-경찰청 간 업무협약 진행('22.6월)
- 자치경찰 R&D 과제선정에 앞서, 지역별 치안 수요 파악을 위한 9개 시·도 선행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킷오프 회의\* 개최(22. 12월)
  -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지역별 치안 이슈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과학치안기술 개발의 예비연구 수행

### ▶ 자치경찰 R&D 주요 내용(예시)

- 도농 복합지역 보행자 교통사고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 AI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개발**
- 산간 지역 실종자 인명구조 관련, 드론 인력풀 확보를 위한 **가상현실 교육프로그램 구축**
- 지역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첨단 호신용 장비, 긴급출동시스템 기술 개발**

## □ '23년 추진 방향

- (**'23년 신규과제 선정**)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연구개발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완료\*('23. 2. 28.) 및 신규과제 공고 진행 중
  - \* 총 18개 지역 중 11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도청 담당자 및 연구개발기관 참여

### ▶ '23년 자치경찰 R&D 신규과제 공모(※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참고)

- 기간 : '23. 3. 2.(목)~ '23. 4. 3.(월) 16:00
- 방법 : 온라인(<https://iris.go.kr>) 접속 후 양식 제출
- 선정 : '23. 4월 중 통보예정

- 지역 주도 연구개발 방식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연구개발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 및 협업이 필요, 자치경찰 R&D 신규과제 공고에 더 많은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참여 요청
- (**지역간 협력·연계**) 향후 선정과제 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과제 수행 2개 지역 시·도청 자경위, 지자체,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협력기반 구축 필요

## □ 추진 배경

- 경찰관은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주취자는 응급의료기관에, 의료적 도움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나 관련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확대 필요

- ▶ 주취자 신고 한 해 100만건 ... 권한 없는데 책임만 떠안은 경찰(‘23. 2. 12. 중앙일보)
- ▶ ‘처치 곤란’ 주취자에 등 돌린 지자체·의료기관 ... “업무 분담 체계 필요”(‘23. 2. 22. 서울경제)
- ▶ 주취자에 구급대원·경찰 ‘진땀’ ... “응급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해야”(‘23. 3. 6. 아시아경제)

## □ 논의 · 협조 사항

-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 주취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

**경직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하는 의식 없는 만취자 외 주취자 중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혼자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도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에 해당

※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이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119구급대원 또는 의사 등의 진단 필요

- 경찰관은 주취자의 의견, 주변 상황 및 119구급대원 등의 진단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 자진 귀가(보호자 인계) △ 보건의료기관·경찰관서 보호조치 등 여부 판단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무의식·외상 주취자는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의식은 있으나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여 의료지원
  - 12개 시·도경찰청에서 19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의식은 있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도 적극 인수하고, 전국 센터의 개소수 확대 방안 협조
- (주취자 보호시설 확대) 보호자 인계가 불가하고 119구급대원·의사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며 이송·응급의료를 거부한 주취자에 대해서는 기온·날씨·장소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지구대·파출소에 보호조치
  - ※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주취자의 의료적 도움 필요 등 응급환자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고 확인서를 받는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소방청과 협의 중
- 지구대·파출소에는 의료전문가가 없는 데다 각종 사건 관계자들의 왕래로 주취자 안정 등 보호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열악
- 지자체는 「경직법」상 공공구호기관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근거로 주취자에게 일시 잠자리 및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는 보호시설을 시범운영하는 방안 협조
  - ※ 경북·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경찰이 긴급구호를 요청한 주취자에 대해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임시숙소 등)에 적극 보호한 사례도 참고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 --.

**붙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병원	주소	전화번호	상주 경찰관 수
1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	을지로 245	02-700-2957	5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내로 156	02-700-2958	6
		동작구	보라매병원	보라매로 5길 20	02-700-2959	6
		종로구	적십자병원	새문안로 9	02-700-2977	5
2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월드컵대로 359	051-750-5886	3
3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평리로 157	053-804-3880	4
4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	방축로 217	032-455-0494 032-580-6000	3
5	울산	남구	중앙병원	문수로472	052-208-0862	4
6	경기 남부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031-888-0114	4
		부천시	다니엘병원	중동로 361	032-670-0001	3
7	경기 북부	구리시	한양대병원	경춘로 153	031-560-9663	4
8	충북	청주시	청주의료원	서원구 흥덕로 48	043-251-1780	1
9	충남	천안시	천안의료원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114	3
		서산시	서산의료원	중앙로 149	041-689-7000	3
10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무왕로 895	063-830-0114	4
11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용흥로 36	054-250-0345	4
12	제주	제주시	제주대병원	아란13길 15	064-750-1569	3
			한라병원	도령로 65	064-760-1666	3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장수로 47	064-760-5666	3

## □ 검토 배경

-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형 사건·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경비·대테러 작전 등 국가경찰 사무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인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및 재난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 활동이 필수적
  - ※ 올해 경찰청에서는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특정감사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
- 경찰청 감사관실은 「공공감사법」에서 규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기구\*로서 국민안전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 \* 「공공감사법」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자체감사를 위해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
-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 활성화를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 필요

## □ '23년 추진 방향

- **(사전 협조)** 국민안전 강화 및 기본과 원칙 중심 직무관리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 관련 감사 계획 수립시 시·도자치경찰위와 사전 협조 원칙
- **(협력·지원 강화)** 국가·자치경찰 사무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종합적·실질적 감사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와 적극 협력하고,
  - \* 관할 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직접 수행은 자치경찰이 하나, 관련한 통일된 법령·정책 등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행
- 필요 시 시·도자치경찰위와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도자치경찰위의 자체감사도 적극 지원
- **(감사 결과 환류)** 자치경찰 사무 관련 감사 결과는 시·도자치경찰위에 통보·공유하여 시·도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권을 적극 지원

